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장겸의원 대표발의)

|          |       |
|----------|-------|
| 의안<br>번호 | 20135 |
|----------|-------|

발의연월일 : 2026. 7. 24.

발 의 자 : 김장겸 · 서천호 · 조지연  
김소희 · 서일준 · 박덕흠  
김용태 · 김재섭 · 김상훈  
최은석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디지털 환경의 확산과 정보의 급속한 증가로 인해 다양한 형태의 텍스트와 정보를 이해하고 비판적으로 수용하는 능력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에도 우리 사회 전반의 문해력 수준이 저하된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국민의 문해력 향상을 위한 교육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도록 하고, 스마트기기 사용 교육과 인공지능교육에서도 문해력교육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지식정보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려는 것임 (안 제22조의7 신설).



##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7(문해력교육)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글과 정보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문해력 향상을 위한 교육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2조의5에 따른 스마트기기 사용 교육과 제22조의6에 따른 인공지능교육 시책을 수립할 때 제1항에 따른 문해력 향상을 위한 교육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 현<br>행             | 개<br>정<br>안                                                                                                                                                                                                                              |
|--------------------|------------------------------------------------------------------------------------------------------------------------------------------------------------------------------------------------------------------------------------------|
| <u>&lt;신 설&gt;</u> | <p><u>제22조의7(문해력교육)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글과 정보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문해력 향상을 위한 교육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u></p> <p><u>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2조의5에 따른 스마트기기 사용 교육과 제22조의6에 따른 인공지능교육 시책을 수립할 때 제1항에 따른 문해력 향상을 위한 교육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u></p> |